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개정 2025. 2. 11.

주식회사 LF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LF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, 제 542 조의 6 제 1 항·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4조 (기업가치 훼손 등 부적격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제한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사를 배제한다.
- ② 아래 각호의 해당하는 인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- 1)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,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2) 위원회가 해당 인사의 이력에 비추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자
-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로 추천하려는 자가 제 4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하려는 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제 9 조의 결의로 위원 중에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선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1 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 (통지 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한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안전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5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로 개정한다.